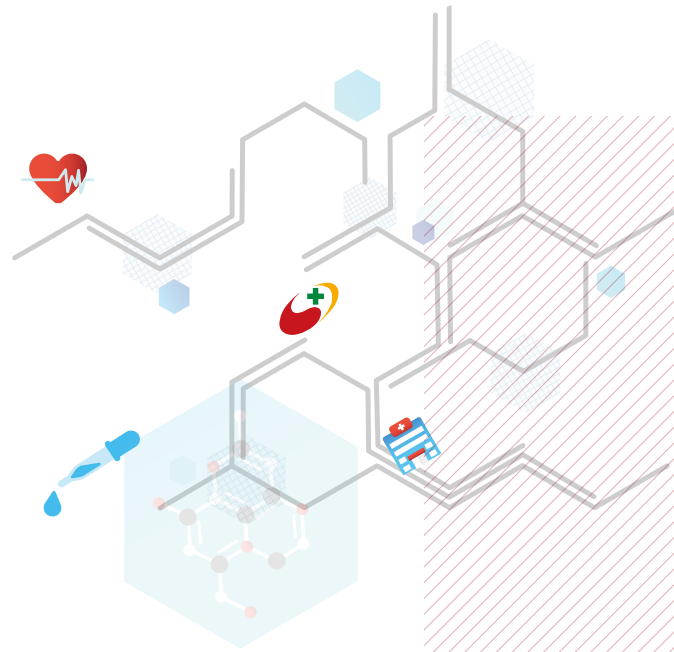


# 산업보건 주요뉴스



##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 사전 예방 교육·홍보(11. 1~15) 후 집중 감독(11~12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겨울철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12월 두 달간 전국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감독에 앞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산재사고 발생 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50배나 높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작업장 환기·산소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한 사람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동료 노동자가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 차례로 쓰러지는 것과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는데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인 질식재해 다발 현장에서도 질식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10. 19)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그 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외주화의 확대에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20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슴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할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2016년 6월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보다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우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전국 확대시행

### 노동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부산지역에서 9~10월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용역·하도급 등으로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기간(9~10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트라우마 상담 노동자분들께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 3명, 부상 2명)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9명)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가을철 화학공장 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

###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징후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사전 파악하여 위험수준별로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맞게 집중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1,584개 화학공장의 4분기에 예정된 정비·보수작업 등 위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거친다.

사업장 경보등급이 확정되면 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밀착 관리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전남권'이 4분기에 위험작업이 많아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며,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 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7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근로실태 부문

- **임금총액** 2017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 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7천 원으로 전년동월(3,334천 원) 대비 1.3%(+43천 원) 증가

※ 추석명절 상여금이 2016년에는 8월에 일부 지급되었으나, 2017년에는 8월에 지급되지 않아 전년동월대비 특별급여 13.2% 감소(추석명절 : 2016년 9월 중순 → 2017년 10월 초순)
- **중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50천 원으로 전년동월(3,520천 원) 대비 0.9%(+30천 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550천 원으로 전년동월(1,486천 원) 대비 4.3%(+64천 원) 증가
-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54천 원)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4,829천 원으로 1.6%(+74천 원) 증가
- **산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37천 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956천 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76천 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24천 원) 순

- **근로시간** 2017년 8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 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전년동월(173.9시간) 대비 2.0시간(-1.2%) 감소

※ 이는 근로일수(20.6일)가 전년동월대비 0.1일(-0.5%) 감소한 데 기인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시간(-1.1%)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1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8시간(-4.8%) 감소
-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1.4%) 감소, 상용 300인 이상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0.2%) 감소
-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1.2시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182.0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6시간), 교육서비스업(158.3시간) 순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 02-2258-7074  
홈페이지 <http://songeui.catholic.ac.kr/gsph>

### 모집과정 및 전공

**가. 과 정** : 석사학위 과정(아간)

**나. 전 공** : 산업 및 환경보건학,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건강증진학, 보건정보학, 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정책 및 관리학, 국제보건학

※ 특수과정 : 산업전문간호사과정(최근 10년 이내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사본 제출)에 한함

###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 2017년 11월 6일(월)~13일(월) 17:00

**나. 접수방법**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http://songeui.catholic.ac.kr/gsph>) 입학안내/입학원서 접수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회원가입

• 가톨릭대학교 선택  
•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입학원서 등 출력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